

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 이유

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 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·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,

법 제5조제3항에 따라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

의료급여 상한일수와 관련하여 질환별 분리 요구가 높았던 ‘정신 및 행동 장애’와 ‘뇌전증’을 각각 산정가능토록 분리하고, 수급권자의 질환 및 의료이용 특성을 고려해 질환별 급여일수 상한 기준을 재조정함으로써,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편의를 제고하고, 잦은 급여일수 연장 승인에 따른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확진검사를 의료급여절차 예외대상으로 제2·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실시 가능(안 제3조 제1항 제8호)

나.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(안 제2조의5)

다. 지자체에서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의료급여 기금으로 지원 가능(안 제28조 제7항 제2호)

라.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및 그 외 기타 질환에 대해서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조정하고, ‘정신 및 행동장애’와 ‘뇌전증’을 분리하여 상한일수를 각각 산정 가능토록 조정(안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5(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)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
제3조제1항의 본문 중 “제7호까지”를 “제8호까지”로 하고, “제8호부터 제13호까지”를 “제9호부터 제14호까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중 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 및 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

제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“정신 및 행동장애(뇌진증을 포함한다)”를 “정신 및 행동장애”로 하고, “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”을 “각 질환별로

연간 380일”로 하고, 제8조의3제1항제3호 본문 중 “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365일”을 “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”로 한다.

제28조제7항제2호 본문 중 “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”을 “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2조의5(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)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.
제3조(의료급여의 절차) ①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차 의료급여기관(이하 "제1차의료급여기관"이라 한다)에 의료급여를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제2차의료급여기관(이하 "제2차의료급여기관"이라 한다)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(이하 "제3차의료급여기관"이라 한다)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,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.	제3조(의료급여의 절차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8호까지----- ----- -----제9호부터 제14호까지----- ----- -----
1 ~ 7. (생략)	1 ~ 7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8. 「건강검진기본법」에 따른 국가

9 ~ 13 (생략)	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진검사 중 결핵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 및 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9 ~ 13을 10 ~ 14으로 함
제8조의3(의료급여일수의 상한)	제8조의3(의료급여일수의 상한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정신 및 행동장애(뇌전증을 포함한다)</u>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: <u>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</u>	2. <u>정신 및 행동장애</u>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: <u>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</u>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: <u>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365일</u>	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: <u>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</u>
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⑦ (생략)	제28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⑦ (현행과 같음)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</u>	2. <u>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5조의2에 따른 사례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